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점수로 심사하여,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참조

② 대상 사업장은? :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공단에 인정 신청한 사업장

1)

③ 우수사업 인정절차는? : 교육(사업주/평가담당자)⇒ 위험성평가실시 ⇒ 인정신청 ⇒ 현장심사 ⇒ 인정결정 ⇒ 인정

④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경우, 혜택은?

- 산재보험료 20% 감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에 한함)
- 평가담당자 교육(16H)이수 시, 해당시간만큼 산안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 대상 법정교육 인정(대체)
-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용자금 우선지원,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료율 감면 등)

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일정표 (09:00~18:00, 이틀과정, 16H)

구분	과 목	세부내용	교육시간
【1일차】			
1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일반)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 산재발생시 조치사항 -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사항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3시간
2	○ 위험성평가 제도개요 (전문)	- 제도도입 배경 및 제도개요 - 사업장 위험성 평가방법 및 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기준 등	2시간
3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전문)	- 위험성평가의 기법 및 단계별 세부절차	3시간
【2일차】			
4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 (전문)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방법 - 위험성평가 실시기법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등	4시간
5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II (전문)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활용방법 등 -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및 처리절차 등	4시간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V]평가담당자 교육 지원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건설업은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건설업은 현장 소재지)	
	교육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교육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장 귀하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참석자 성명, 교육 참석자 휴대전화번호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 업무 처리	교육이수 다음연도부터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업무처리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수행업체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교육이수 다음연도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험성평가 교육 만족도 조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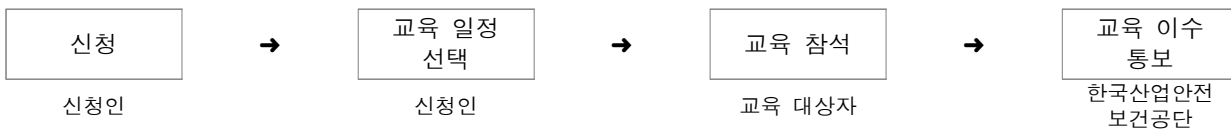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해당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교육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교육 위탁계약서(신청서)

재직사원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_____(이하"위탁사업장"이라 한다)와 "한국안전기술협회"(이하"협회"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내용 및 교육 참가자	가. 계약내용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인원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2026.06.10.-11.	16시간	명							
				1인당 교육비								
				회원사 150,000 원								
				비회원사 206,000 원								
나. 사업장정보												
위탁기관		회사명 (법인명)	대표자	상시근로자수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업태	종목									
		주소	계산서 Email									
		전화번호	팩스번호									
다. 교육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부서	직위	핸드폰번호								
제2조	신의 및 성실의무	가. "위탁사업장"과 "협회"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나. "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고 수료기준에 부합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한다. 수료기준은 출석률 100%이다.(법정 교육 이수 시간 준수)										
		다. "협회"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의 귀책사유로 관할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교육과정이 취소되는 경우 "협회"가 책임을 진다. (단, 이는 "위탁사업장"이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였을 때에 한하며, "위탁사업장"의 무단이탈 등에 따른 교육 미이수 시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라. 부득이한 이유로 교육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교육개시 3일전까지 연기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없이 교육 불참 및 출석 후 중도 이탈 시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마. "위탁사업장"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 및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협회"는 제공받은 정보를 본 교육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2(등록기관의 평가)에 따른 교육기관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에 제3자 제공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제공 받는자</th> <th style="width: 30%;">제공 항목</th> <th style="width: 20%;">제공 목적</th> <th style="width: 35%;">보유기간</th> </tr> <tr> <td>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td> <td>성명, 교육수료기관, 연령대, 소속회사정보(지역, 업종, 규모), 직위, 전화번호(휴대 및 사무실)</td> <td>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td> <td>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td> </tr> </table>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명, 교육수료기관, 연령대, 소속회사정보(지역, 업종, 규모), 직위, 전화번호(휴대 및 사무실)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성명, 교육수료기관, 연령대, 소속회사정보(지역, 업종, 규모), 직위, 전화번호(휴대 및 사무실)	교육기관 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에 활용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처리 즉시 폐기									
제3조	해석 및 합의	가. 본 계약서 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나.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위탁사업장"과 "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사업장)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회사명 :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76, 타워타워Ⅱ 9층 대표자 : 홍 광 열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div>
---	--